



서울특별시 SH공사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개정사규 공포(직제규정,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)

사장방침 제201호 「직제규정 및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 개정」(2016.3.15) 및 사규 관리규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 개정(안)을 확정·공포합니다.

1. 개정사규 및 주요내용

연번	개정사규	주요내용	
1	직제규정	개정 이유	○ 정원외인력정수 관리근거를 직제규정에서 정관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직원을 구분하는 용어를 일원화하며 오기 등을 정정하고자 함.
		개정 내용	○ 정관(제22조제2항)에서 정원외인력정수관리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5조(정원외 인력정수) 삭제 ○ 직제규정제10조에서 직원을 일반직, 전문직, 전문위원으로 구분하므로 직제규정 제14조(정원)제1항과 용어 통일(제18조 및 제19조) ○ 오기, 탈자 등의 정정(제17조 및 제18조)
2	정원외인력 정수관리규정	개정 이유	○ 정원외인력정수 관리근거의 변경 및 책정절차의 강화, 사업다각화에 따른 전문인력의 확대를 위한 정수 조정 등을 위해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		개정 내용	○ 정원외인력정수 관리 근거 및 적용대상의 개정 (제1조 및 제2조) ○ 정원외인력 요청기준 정립 : “일시적인 사업의 확대 등” 으로 한정(제4조) ○ 정원외인력정수 책정 심사 강화 (제5조) - 승인권자 변경 (정수관리부서 → 이사회 의결) - 사용부서의 이사회 참석 및 의견진술의무 부여(제5조제3항) ○ 정원외인력정수 관리부서 : 경영관리부로 통일 (제6조제3호) ○ 정수 조정(별표1) - 신규 수요 인력 : 속기사, 주거복지, 유통, 식물관리 - 사무전문가의 재분류 및 정수 조정 - 임대주택관리직원의 8급급 이하 정수 통합 ○ 한시정수의 운영기간 변경(부칙) - 2년 미만 → 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

2. 공 포 문 : 첨부참조
3. 공 포 일 : 최종결재권자 결재일
4. 시 행 일 : 공포한 날부터 시행

2. 공포문_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(규정제638호). 끝.

법 무 지 원 실 장

수신자 SH부01~71, SH센터01~11

부 원	김채원 부원	윤지혜 법무지원실장	강기연 기획경영본부장	김우진
사 장	^{04/08} 변창흠			
협조자				

시행 법무지원실-1135 (2016.04.08) 접수 ()
방참번호 사장 방참 제310호
우 138-201 /
전화 3410-7128 전송 3410-7131 / cw0131@i-sh.co.kr / 공개